

제424회 임시회
'25. 3. 13.(목)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박지현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5년 3월 4일

나. 회부일자 : 2025년 3월 5일

3. 제안이유

가.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충북연구원 내에 설치된 ‘충청북도공공투자분석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성·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직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충청북도가 시행하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기능 등을 규정하여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 등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공공투자분석센터의 설치 근거 및 기능(안 제5조)

다. 충청북도 공공투자분석센터 운영 실적의 보고(안 제7조)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음창규)

가.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이하 ‘충북공투센터’)는 충청북도 재정의 효율적 활용 및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 2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설립되었음.
- 설립 이후 충청북도 내 국책사업 지원, 사전타당성조사,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적정성 검토, 지방자치단체 공공투자사업 지원 및 교육과 더불어 공공투자사업 평가체계 연구 및 지방 공공투자센터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수행하였으며, 충청북도의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음.
- 현재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는 민선 5기 도시자 재임 당시 내부방침(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 운영규칙, 2012.4.17. 제정)에 의해 설립된 조직으로 별도의 법률이나 조례에 의한 설립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
- 이에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충북연구원 내에 설치된 ‘충청북도공공투자분석센터’ 설립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성·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직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 또한, 지방분권, 지방이양이라는 중앙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타 시·도 조례 제정 현황

- 17개 광역시도 중 강원, 전북, 대전, 세종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지자체 출연 연구원 내에 공공투자관리·분석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7개 시도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
- 7개 시도에서 조례에 제시한 공공투자분석센터의 주요 업무는 ‘재정투자사업의 사전 타당성 검토’로서 이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제시된 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는데 기여하고 있음.
- 조례 내용을 보면, 업무 범위 및 공공투자분석(관리)센터 업무 위탁 근거 제시, 도지사의 책무, 검증방법 등이 있으며, 서울, 부산, 충남, 제주의 경우,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공공투자사업 관련 업무실적을 도지사(시장)와 도의회(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제출해야 함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조례 제정 현황]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2019. 9. 26.)	부산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2019. 4. 10.)	인천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2019. 9. 23.)	경기도 공공투자 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8. 4. 11.)	충청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2020. 6. 10.)	경상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2022. 1. 27.)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2015. 8. 18.)
- 목적 - 정의 - 시장의 책무 - 다른법령 등 과의 관계 - 업무*	- 목적 - 정의 - 시장의 책무 - 다른법령 등 과의 관계 - 업무의 위탁*	- 목적 - 정의 - 시장의 책무 - 다른 조례와의 관계 - 공공투자관리 센터의 설치 - 검증	- 목적 - 정의 - 도지사의 책무 -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 공공투자 관리센터 - 검증 - 시행규칙	- 목적 - 정의 - 도지사의 책무 - 다른 조례와의 관계 - 공공투자관리 센터의 설치 - 검증 - <u>운영실적 보고*</u> - 시행규칙	- 목적 - 정의 - 도지사의 책무 -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업무의 위탁 - 검증 - 시행규칙	- 목적 - 정의 - 도지사의 책무 -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업무의 위탁* - 검증 - 시행규칙

다.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으로

- 공공투자사업의 개념을 「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자사업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구분해 규정하였으며,
- 이를 통해 공공투자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조례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문제점 없음.

○ 안 제3조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 도지사에게 책임을 부여하여 공공투자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함.

○ 안 제5조는 공공투자관리분석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센터의 지위와 기능을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음.
- 센터 운영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보장하여 투자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안 제7조는 운영실적의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공공투자분석센터의 장이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공공투자사업 관리 실적을 도지사와 충청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명시하여
- 센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적 보고를 통해 도정의 투자사업 관리 체계를 개선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됨.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공공투자분석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심사 과정에서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본 조례안을 통해 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현재 운영 중인 조직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민간투자사업 심의 등의 객관성과 투명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향후 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영실적을 면밀히 점검하는 동시에 전문 인력의 확보와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